

경기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23 - 27호

##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 필기시험 장소 공고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연구사, 7·8·9급) 필기시험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7일

경기도인사위원회위원장

### 1 시험일시

- 2023. 3. 25.(토) 10:00 ~ 10:40 (40분) / ~ 11:00 (60분)

※ 시험장 출입은 08:00부터 가능하며 09:10까지 입실

- 운전9급 : 10:00 ~ 10:40 (2과목, 40분)
- 연구사, 수의7급, 환경8·9급, 식품위생9급 : 10:00 ~ 11:00 (3과목, 60분)

### 2 시험장소

- 본인의 응시직렬(직류, 임용예정기관)에 따라 아래 표에서 시험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에게 배정된 시험장소에서만 응시 가능하며 직렬·직류·임용예정기관에 따라 시험장소가 다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된 시험장소 이외 시험응시 불가)
- 지역별로 학교명이 유사한 곳이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시험장소, 교통편, 이동 소요시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장 내 외부차량의 주차를 일절 허용하지 않으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장		직렬(직류) : 임용예정기관	비고
학교명	주소		
수원공업고등학교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세지로 254(인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li>환경연구사(환경) : 경기도, 성남</li><li>보건연구사(공중보건) : 경기도</li></ul>	주차 불가

시험장		직렬(직류) : 임용예정기관	비고
학교명	주소		
성일정보고등학교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시민로77번길 10-2(성남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예연구사(학예일반) : 경기도, 화성</li> <li>• 수의7급(수의) : 경기도, 화성, 부천, 평택, 파주, 광주, 광명, 하남, 오산</li> <li>• 환경8급(수질) : 부천, 군포, 이천, 과천</li> <li>• 환경9급(수질) : 화성, 오산, 양평</li> <li>• 환경9급(대기) : 의왕</li> <li>• 식품위생9급(식품위생) : 시흥, 이천</li> </ul>	
동탄목동중학교	경기도 화성시 동탄순환대로20길 52(목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전9급(운전) : 경기도, 수원, 성남, 부천, 평택, 하남, 안성, 여주, 과천, 경기도의회</li> </ul>	주차 불가
운정중학교	경기도 파주시 와석순환로 35-33(야당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예연구사(학예일반) : 남양주</li> <li>• 식품위생9급(식품위생) : 파주, 구리, 포천, 가평</li> <li>• 환경8급(수질) : 남양주, 가평</li> <li>• 환경9급(수질) : 파주</li> <li>• 환경9급(대기) : 파주, 의정부, 포천, 연천</li> <li>• 환경9급(폐기물) : 의정부</li> </ul>	
의정부 공업고등학교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로 57(가능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전9급(운전) : 고양, 남양주, 파주, 포천, 가평, 연천</li> </ul>	

### 3 응시자 유의사항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응시자 안내사항]

-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시험 당일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 출입을 전면 통제합니다.
- 모든 응시자는 시험장 입실 전 반드시 손소독제를 사용하고 발열검사를 받아야 하며, 증상 확인 후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자는 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시험장 입실 시 응시자 간 안전거리를 최소 1.5m 이상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장 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드리며, 시험시간 중에도 착용하되, 응시자 신분 확인 시에는 시험감독관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 ※ 시험장에서는 마스크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인별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라며, 분실 또는 착용 중 훼손 등에 대비하여 여분의 마스크를 지참할 것을 권장합니다.

- 시험일(2023.3.25.) 현재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격리기간 중에 있는 응시자는 일반 시험장에서 응시가 불가합니다. 시험 응시를 희망하는 경우 확진 등에 따른 격리 통보(판정)를 받은 즉시 관할 보건소에 본인이 응시자임을 알린 후, 아래의 신청기한 내에 사전 신청을 해야 하며 별도의 장소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시험장소 및 방법 별도 통보)

**< 확진자 등 격리대상자 응시 사전신청 안내 >**

- 1) 신청기한 : **2023. 3. 24.(금) 18:00까지**
- 2) 제출서류
  - 입원·입소 격리자 : 응시 신청서[붙임2], 시험응시가 가능하다는 의사소견서
  - 재택치료자 등 그 외 격리자 : 응시 신청서[붙임2]
- ※ 격리대상 응시자의 경우 별도시험장에서 응시(시험장소 신청자 별도 안내)
- 3) 신청방법: **전화 문의(경기도 인사과 인재채용팀, ☎ 031-8008-4046) 후 신청기한 내 제출서류 이메일(ggexam@korea.kr) 송부**  
※ 메일제목 : [제1회 경체 확진자 응시 사전신청] 성명 - 응시번호  
※ 시험일 이전까지 퇴원·퇴소, 격리해제가 예정되어 있는 응시자는 사전신청 대상 아님  
※ 필요할 경우, 보건소 등 방역당국에 관련 사항에 대한 조회·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타 시·도 거주자의 경우는 여건에 따라 응시가 제한될 수 있음  
※ 시험장 준비, 시험문제 수송 등의 관계로 기한 내 사전신청 하지 않은 경우 응시가 어려울 수 있음

- 모든 응시자는 시험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응시자 유의사항[붙임3]”에 따라 **올바른 마스크 착용, 손소독 및 발열검사, 시험실 환기 등 시험 당일 진행되는 안전대책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모든 시험장은 시험전일 및 시험종료 후 전문방역업체를 통해 방역 소독을 실시합니다.
- 격리대상자 응시 여부 확인을 위해 시험장 출입구에서 응시표 또는 신분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퇴실 시 인원 분산을 위해 시험실별 퇴실 가능 시간을 별도로 고지하고 저층부터 순차적으로 퇴실 예정이오니 시험종료 후 시험감독관의 퇴실 안내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 모든 응시자는 시험 시행일로부터 7일간 발열, 기침, 인후통, 호흡기 증상 등을 스스로 모니터링해야 하며, 코로나19 의심 징후가 있으실 경우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지역번호+120) 또는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사항]**

- 모든 응시자는 시험당일 **09:10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시험 당일 08:00부터 입실 가능)
- 모든 응시자는 시험당일 **응시표, 신분증,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 수정테이프**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응시표 :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s://local.gosi.go.kr>) → 마이페이지 → 응시표 출력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주민등록번호(뒷자리)가 없는 여권 : 여권정보증명서 함께 지참),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중 하나**  
※ 모바일신분증, 공무원증, 학생증, 자격수첩,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신분증 미지참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답안을 잘못 표기한 경우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수정 가능**(수정액·수정스티커 등은 사용 불가)  
다만, 본인이 가져온 수정테이프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별도로 제공하지 않음  
※ 시험시간 중 타인의 수정테이프를 빌리는 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됨
- 시험 전일까지 시험장소, 교통편, 이동소요시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시험 전일 및 시험 당일 08:00 이전 시험실 출입 불가)
-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시험장 내 외부차량의 주차를 일절 허용하지 않으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필기시험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응시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시행일을 포함한 3일 이내에 [ 2023. 3. 25.(토) 09:00 ~ 3. 27.(월) 18:00 ), 기간 중 상시 등록 가능 ]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 접속하여 가산점 정보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가면 응시자는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습니다.**  
**(09:50 시험장 출입문 일괄 통제)**
-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시험 전 이뇨작용을 일으키는 음료(카페인·탄산음료 등)를 마시는 것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탈·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입실이 불가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시행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함

- 타 응시자에게 방해되는 행위(시험시간 중 다리를 떠는 행동, 볼펜 뚝딱 소리, 반복적 헛기침 등)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장(시설 전체) 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으며,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 시험시간 중에는 휴대전화, 태블릿PC, 녹화기능이 탑재된 기기(안경 등), 스마트 시계, 무선호출기, MP3, 이어폰 등 일체의 통신기기와 전자계산기, 전자사전 등의 전자기기를 휴대할 수 없으며, 시험시간 중 휴대 사실이 발견될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당해시험을 무효처리하고 퇴실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산·통신 등이 가능한 시계(스마트 시계 등), 소리로 인해 타 응시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시계는 사용 불가
- 시험 종료 후 시험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퇴실할 수 없으며, 배부된 모든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번 시험 문제는 비공개 대상이므로 응시자는 문제책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시험 종료 후 문제책 회수)**  
※ 비공개 문제책의 내용을 응시표 등에 옮겨 적거나 녹화기기(안경 등)로 촬영하거나 문제책을 훼손해서는 안됩니다.

## [답안지 기재 및 표기]

- 점수산출은 판독기가 판독한 결과에 따릅니다. 모든 기재 및 표기사항은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을 사용하여 반드시 <보기>의 올바른 표기방식으로 답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득점 불인정 등)은 응시자 본인 책임입니다. 특히, 답란을 전부 채우지 않고 점만 찍어 표기한 경우, 번짐 등으로 두 개 이상의 답란에 표기한 경우, 농도가 옅은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여 답안을 흐리게 표기한 경우 등은 불이익(득점 불인정 등)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기> 올바른 표기 : ●

잘못된 표기 : ○, ◉, ⊖, ⊙, ⊘, ⊚

- 빨간색 볼펜, 연필, 샤프펜 등 펜의 종류와 상관없이 예비표기를 하여 중복답안으로 판독된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는 시험시작 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문제책 앞면에 인쇄된 책형을 확인한 후 답안지 책형란에 해당 책형을 반드시 기재(표기)하여야 합니다.  
※ 책형 및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당해시험 무효 처리 등)을 받을 수 있음
- 시험이 시작되면 문제책 편철이 표지의 과목순서와 일치하는지 여부, 문제책 누락, 인쇄 상태 및 파손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답안은 반드시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에 맞추어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대로 채점되므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답안은 매 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 “●”로 표기해야 하며, 답안을 잘못 표기하였을 경우에는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가져온 수정테이프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별도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시험시간 중 타인의 수정테이프를 빌리는 행위는 부정행위로 간주되므로 수정테이프가 없는 경우 답안지를 교체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표기한 답안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완전히 지우고, 부착된 수정테이프가 떨어지지 않도록 손으로 눌러주어야 함(수정액 또는 수정스티커 등은 사용 불가)  
※ 불량 수정테이프의 사용과 불완전한 수정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
- 시험 중 답안지를 교체할 경우에는 성명, 책형, 생년월일 등 필수기재사항을 먼저 기재하고 시험감독관 서명이 있어야 답안을 옮겨 적을 수 있으며, 이전 답안지는 시험감독관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
- 답안지는 훼손·오염되거나 구겨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특히 답안지 상단의 타이밍 마크(■ ■ ■ ■ ■)를 절대 훼손해서는 안됩니다.

## [부정행위 등 금지]

○ 다음의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제1항)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다음의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제2항)

-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간 후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는 행위
  - 시험시간 중 응시자 상호간에 대화를 하거나 물품(수정테이프 등)을 빌리는 행위
  - 답안지를 고의로 찢거나 심하게 훼손하는 행위
  - 답안지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지 않아 당해 답안지로 응시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시험 종료 후에 시험감독관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 본인에게 지정된 시험장이 아닌 타 시험장에서 응시하는 행위
  - 기타 시험감독관의 지시 등에 따르지 않아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특히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거나 시험감독관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할 경우, 당해시험을 무효처리할 예정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책형 및 인적사항을 포함한 모든 기재사항은 시험시간 내에 해당 시험실에서 작성을 완료하여야 함

▶ 시험 중에 소지하고 있는 응시표의 앞면 또는 뒷면에 시험문제와 관련된 내용이 인쇄되었거나 메모되어 있는 경우 당해시험이 무효 처리될 수 있으며, 특히 부정한 자료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4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안내

-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은 2023. 4. 18.(화) 전·후에 경기도 홈페이지(<https://www.gg.go.kr>)에 게시합니다.

## 5 필기시험 가산점 적용 및 등록 안내

답안지에는 가산점 표기란이 없으므로,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응시자는 반드시 필기시험 시행일을 포함한 3일 이내에 [2023. 3. 25.(토) 09:00 ~ 3. 27.(월) 18:00, 기간 중 상시 등록 가능]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가산점 정보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 \*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s://local.gosi.go.kr>) → 마이페이지 → 가산자격증 등록
- \* 의사상자 등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지원과 (☎044-202-3255)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라며, 필기시험 시행 전일(2023. 3. 24.)까지 지정되지 않으면 가산점을 받을 수 없음

### 가.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가산비율	비 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 등 가점은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 적용</li> </ul>
의사상자 등	과목별 만점의 3% 또는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취업지원대상자(또는 의사상자 등) 가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li> </ul>
자격증 소지자	과목별 만점의 3% 또는 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나~마’ 참고</li> </ul>

### 나. 취업지원대상자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업지원대상자로 지정된 경우에 한함)

-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10%)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2)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모집단위별(기관별·직급별·직류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사전에 본인이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 (보훈상담센터 ☎1577-0606)에서 확인

**다. 의사상자 등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의사상자 등으로 지정된 경우에 한함)**

- (1) 「지방공무원법」 제34조의2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6조에 의한 의사상자 등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3%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2) 의사상자 등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모집단위별(기관별·직급별·직류별)로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의사상자 등 여부와 가점비율은 사전에 본인이 직접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지원과 (☎044-202-3255)에서 확인
- (3) 의사상자 등 가점 대상자가 '나' 항의 취업지원대상자 가점도 받을 수 있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을 가산합니다.

**라. 자격증 소지자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분야 시험에 응시할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 분	환경연구사, 보건연구사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가산비율	5%	3%

※ 가산대상 자격증 종류는 [붙임1] '가산 자격증 안내' 참조

- 해당분야 자격·면허 소지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직렬(직류)은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금회 시험의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은 환경연구사, 보건연구사만 해당

**마. 가산점 적용과 관련한 유의사항**

- (1) 필기시험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시행일을 포함한 3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 센터(<https://local.gosi.go.kr>)에 자격증 정보 등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 가산점 등록기간 및 시간

시험명	등록기간(기간 중 상시 등록 가능)
제1회 경력경쟁임용시험 (연구사, 7·8·9급)	2023. 3. 25.(토) 09:00 ~ 3. 27.(월) 18:00

## ○ 가산점 등록대상 및 입력사항

등록대상	등록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의사상자 등	취업지원대상자(의사상자 등) 여부, 보훈(증서)번호, 가점비율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 종류, 자격번호

※ 자격증 등에 관한 정보를 잘못 기재하는 경우에는 응시자 본인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취업지원대상자(또는 의사상자 등) 가점과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은 각각 가산됩니다.